

[별첨5]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

1. 편의제공 대상

- 공단 채용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

2. 편의제공 신청방법

-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 편의사항을 입사지원서에 작성하여 요청
 - 증빙자료 제출은 필기시험·면접시험 응시 대상이 되면 공단이 별도 요구

3.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-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
 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발급한 원본만 인정(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)
 - ※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
4. 편의제공 내용

전형단계	장애유형		편의제공 내용
공통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 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필기 전형	지체 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뇌변병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시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청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면접 전형	지체 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
	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뇌변병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시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청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사전달보조요원 지원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